

의안번호	제 291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발 의 자	이 광 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 의 자 : 이광희, 윤희창, 정영수,
김양희, 이숙애, 이종욱,
장선배

1. 제정이유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 및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운동장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교육기본법
- 2) 유아교육법
- 3) 초·중등교육법
- 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나. 정책 토론회 : 2015. 9. 9.

다. 관계부서 협의 : 2015. 9. 22.

라.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2015. 10. 1. ~ 2015. 10. 2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교육기본법[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제3624호, 2013.12.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